

# 사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일자 : 1999. 11. 24

제 출 자 : 사천시장

## 1. 제안이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대책으로 시세 감면조치

## 2. 주요골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함(안 제29조)

## 3.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5. 입법예고

가. 예 고 기 간 : 1999. 10. 12 ~ 1999. 10. 31 (20일간)

나. 예 고 방 법 : 신문공고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제30조 내지 제33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 산 설 &gt;</p>	<p>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p>제29조 내지 제32조 (생략)</p> <p>〈신설〉</p>	<p>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p> <p>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제30조 내지 33조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현행	개정안
<p>⑦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⑦ ----- -----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 ----- -----</p>
<p>⑧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⑧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2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사용료, 보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을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제2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헌 행 개 정 안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p>&lt;신설&gt;</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p>제23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략)</p> <p>1. (생략)</p> <p>가. <u>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투법”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u></p> <p>나.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다. <u>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라. (생략)</p> <p>마.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u></p> <p>바. ~ 사. (생략)</p> <p>2. (생략)</p> <p>가.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 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나. <u>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제23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u>외국인투자촉진법</u> ----- ----- ----- ----- -----</p> <p>나. ----- ----- <u>이상인 사업</u></p> <p>다. <u>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u></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u>외국인</u> ----- -----</p> <p>바. ~ 사.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 <u>미만인 사업</u></p> <p>나. <u>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u></p>

현행	개정안
<p>다. (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외국인 ----- ----- -----</p>
<p>마. ~ 바. (생략)</p>	<p>마. ~ 바. (현행과 같음)</p>
<p>3. (생략)</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 이상1천만 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3. (현행과 같음)</p> <p>가. ----- ----- 미만인 사업</p> <p>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외국인 ----- ----- -----</p>
<p>마. ~ 사. (생략)</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p>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생략)</p>	<p>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현행과 같음)</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p>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 <math>\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math></p>
<p>3. 3층 이상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 3분의 1  다. 3층은 "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의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p>

현행	개정안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times \frac{\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p>&lt;신설&gt;</p>	<p>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 3분의 1  다. 3층은 "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생략)</p> <p>③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6. <u>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 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lt;삭제&gt;</p> <p>④제1항 및 제2항의 ----- ----- ----- -----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p>

현행	개정안
<p>제27조 (대부료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u>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 관리비에 충당</u> 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제29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lt;신설&gt;</p>	<p>제29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 대부정리부-----</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p> <p>-----</p> <p>-----</p> <p>----- 농업진흥지역안-----</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10년간 매각 목적외로 <u>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u> 염려가 없는 경우</p> <p>2. ~ 3.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1. (생략)</p> <p>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u>위치하거나</u>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만 한다.</p>	<p>1. ----- ----- ----- ----- ----- ----- <u>사용할</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u> ----- ----- ----- ----- -----</p>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30억 달러 이상인 대형 <u>공장건설사업</u> 및 동부대 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인원이 1천명 이상인 <u>공장용지내</u> 의 재산	1. (현행과 같음) 2. ----- ----- <u>사업</u> ----- ----- 3. ----- ----- <u>사업장</u> -----
④ (생략) 1. <u>외·투법 제9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도 기술수반 사업 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생략)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u>공장용지내</u> 의 재산 4.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u> 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장내의 재산 5.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u>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u> ----- ----- ----- ----- ----- ----- 2. (현행과 같음) 3. ----- ----- <u>사업장</u> ----- ----- 4. <u>외국인</u> ----- ----- ----- 5.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44조 (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읍·면·동청사 신축시 정비 우선 순위에 의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 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44조 (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당해시의---  -----  -----  -----</p>
<p>제46조 (청사의 설계) 청사 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u></li> <li>2. <u>지역 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u></li> <li>3. <u>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u></li> <li>4. <u>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비 시설로 활용 할수 있는 지하시설</u></li> <li>5. <u>철근콘크리트, 냉·난방 시설원칙</u></li> <li>6. <u>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시설</u></li> <li>7. <u>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 설정</u></li> </ol>	<p>제46조 &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제47조 (도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7조&lt;삭제&gt;</p>
<p>제48조 (종합청사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u>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48조 (종합청사의 도모) ①----- ----- <u>유관 행정관서</u>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49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국·담당관·과장등 소속 직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u>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u></p>	<p>제49조(정의) ----- ----- <u>실과장</u> ----- -----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61조 (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61조 (준용) ①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u>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u></p> <p>②채권인 공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 제8항,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p>